

## 투자설명서 변경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1. 변경 대상 펀드

NO	펀드명칭
1	프랭클린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2	프랭클린 재형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3	프랭클린 NextStep 다이나믹 그로스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4	프랭클린 NextStep 밸런스드 그로스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 2. 변경내용

#### 프랭클린 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요약정보	<u>(신설)</u>	<u>요약정보</u>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에 따른 신설
제 2 부.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추가)</u>	<u>2016년 4월 29일 : 운용전문인력 변경</u>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u>정정 전 1) 참조</u>	<u>정정 후 1) 참조</u>	운용전문인력 변경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 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b>*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		정보 갱신
제 3 부. 집합 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2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 제 4 호 가목에 의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 <b>*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b>*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		
제 5 부.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b>▶ 의무해지</b>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b>▶ 의무해지</b>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u>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제 5 부.3.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p>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u>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이하 생략)</p>	<p>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u>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p> <p>(이하 현행과 같음)</p>
제 5 부.3. 나. (2) 수시공시	<p>⑤ 투자설명서의 변경.</p> <p>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p>	<p>⑤ 투자설명서의 변경.</p> <p>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u>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p>
제 5 부.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p>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u>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u>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li> </ul>	<p>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u>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u>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li> <li>-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li> </ul>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b>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b> 공시해야 합니다.	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b>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증권시장을 통하여</b> 공시해야 합니다.	
--	---	--	--

**정정 전 1)**

**가. 운용전문인력(2015.03.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 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	책임운용전문인력	47개	10,250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 (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 (2000-2008) 당사 FTMISS팀 (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 (2009.5-현재)	-
<b>김동일</b>	<b>1962</b>	<b>부책임용 전문인 력</b>	<b>55개</b>	<b>16,575억</b>	<b>삼성생명 (1987-1996)</b> <b>삼성투신운용 (1996-1999)</b> <b>KTB자산운용 (1999-2000)</b> <b>리젠트자산운용 (2000-2001)</b> <b>당사 채권운용CIO (2001-현재)</b>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 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정정 후 1)**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6.03.31.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	책임운용전문인력	<b>47개</b>	<b>10,393억</b>	당사 컴플라이언스팀 (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 (2000-2008) 당사 FTMISS팀 (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 (2009.5-현재)	-

김강호	1983	부책임용전문인력	27개	9,468억	현대증권 장외파생 구조화상품팀 (2009.12-2012.05) 당사 채권운용팀(2012.06-현재)	-
-----	------	----------	-----	--------	---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 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용전문인력은 책임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동일	2008.03.03 ~ 2016.04.28
김강호	2016.04.29부터

**다.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프랭클린 재형 미국 인컴 증권 자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요약정보	(신설)	요약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에 따른 신설
제 2 부.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6년 4월 29일 : 운용전문인력 변경	부책임용전문인력 변경
제 2 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정정 전 1) 참조	정정 후 1) 참조	운용전문인력 변경
제 2 부. 13. 나. 집합투자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 *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

<p>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주 5) <u>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가 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u></p>	<p>주 5) <u>합성 총보수·비용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모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FTIF Franklin Income Fund I share 의 총 보수·비용비율을 약 연 0.87%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여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2016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u></p>	
<p>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2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30 조 제 2 항 제 4 호 가목에 의거한 최근 결산기의 재무제표 확정으로 인한 정정</p> <p>*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p> <p>라. 운용자산규모 투자설명서 연갱신에 따른 업데이트</p> <p>*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제 5 부.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p>	<p>▶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p>	<p>▶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p>	<p>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p>

		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u>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u>
제 5 부.3. (2)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u>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 (이하생략)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u>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u> (이하 현행과 같음)
제 5 부.3. 나. (2) 수시공시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u>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u>
제 5 부.3. 나.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u>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u>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u>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u>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p>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b>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b> 공시해야 합니다.</p>	<p>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p> <p>-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p> <p>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b>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b> 공시해야 합니다.</p>	
--	--	--	--

**정정 전 1)**

**가. 운용전문인력(2015.03.31.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	책임운용전문인력	47개	10,250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 (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 (2000-2008) 당사 FTMIS팀 (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 (2009.5-현재)	-
<b>김동일</b>	<b>1962</b>	<b>부책임용전문인력</b>	<b>55개</b>	<b>16,575억</b>	<b>삼성생명 (1987-1996)</b> <b>삼성투신운용 (1996-1999)</b> <b>KTB자산운용 (1999-2000)</b> <b>리젠트자산운용 (2000-2001)</b> <b>당사 채권운용CIO (2001-현재)</b>	<b>-</b>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 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FTIF Franklin Income Fund 운용전문인력**

**정정 후 1)**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2016.03.31. 현재)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자산 규모(원)		
백상훈	1972	책임운용전문 인력	47개	10,393억	당사 컴플라이언스팀 (1999-2000) 당사 채권운용팀 (2000-2008) 당사 FTMIS팀 (2008-2009.4) 당사 채권운용팀 (2009.5-현재)	-
김강호	1983	부책임용전문 인력	27개	9,468억	현대증권 장외파생 구조화상품팀 (2009.12-2012.05) 당사 채권운용팀(2012.06-현재)	-

※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팀이 담당하며,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 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동일	2013.03.06 ~ 2016.04.28
김강호	2016.04.29부터

다. FTIF Franklin Income Fund 운용전문인력

2. BM 변경

프랭클린 NextStep 다이나믹 그로스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 부.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016년 4월 29일 : 비교지수 변경	BM 변경
제 2 부. 9.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 비교지수 : Custom 94%(40% MSCI AC Asia Pacific Ex-Japan + 35% MSCI ACWI + 20% Barclays Multiverse (hedged to USD) + 5% <u>HSBC Asian Local Bond Index(ALBI)</u> ) + 6% Call Index	* 비교지수 : Custom 94%(40% MSCI AC Asia Pacific Ex-Japan + 35% MSCI ACWI + 20% Barclays Multiverse (hedged to USD) + 5% <u>JPM GBI-EM Broad Diversified Asia Index</u> ) + 6% Call Index	벤치마크 변경
	* <u>HSBC Asian Local Bond Index: HSBC Asian Local Bond</u>	* <u>JPM GBI-EM Broad Diversified Asia Index</u> 는 JP 모간이 발표하는	

	<p><u>Index(ALBI)는 유동성이 높은 채권의 총수익률을 추종하는 지수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과 같은 로컬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성과를 추종함. 개별 국가의 채권 인덱스 대비 지역 벤치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됨.</u></p>	<p><u>채권 지수 중 하나로, 이머징 마켓 조건에 부합한 Global Bond Index 유니버스 내 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Global Bond Index-Emerging Market Broad의 수정된 버전임.</u></p>	
<p>제 2 부. 9.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p>	<p>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지역, 국가, 산업별 투자비중 및 시가총액에 따른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80%를 투자하고, 채권 및 <b>채권관련 증권</b>에 20~40%를 자산배분할 계획이며, 이 자산배분 내역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역의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관점에 따라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지역, 국가, 산업별 투자비중 및 시가총액에 따른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80%를 투자하고, 채권 및 <b>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b>에 20~40%를 자산배분할 계획이며, 이 자산배분 내역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역의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관점에 따라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p>	
<p>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p>	<p>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35%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p>	<p>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b>연</b> 약 0.35%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오타 수정</p>

	이할 수 있습니다.)		
--	-------------	--	--

프랭클린 NextStep 밸런스드 그로스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 부.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u>(추가)</u>	2016년 4월 29일 : 비교지수 변경	BM 변경
제 2 부. 9.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p>* 비교지수 : Custom 94%(30% Barclays Multiverse (hedged to USD) + 30% MSCI AC Asia Pacific Ex-Japan + 30% MSCI ACWI + <b>10% HSBC Asian Local Bond Index(ALBI)</b>) + 6% Call Index</p> <p><b>* HSBC Asian Local Bond Index: HSBC Asian Local Bond Index(ALBI)는 유동성이 높은 채권의 총수익률을 추종하는 지수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과 같은 로컬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성과를 추종함. 개별 국가의 채권 인덱스 대비 지역 벤치마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글로벌 자산배분전략 의사결정에 기여하기 위해 구성됨.</b></p>	<p>* 비교지수 : Custom 94%(30% Barclays Multiverse (hedged to USD) + 30% MSCI AC Asia Pacific Ex-Japan + 30% MSCI ACWI + <b>10% JPM GBI-EM Broad Diversified Asia Index</b>) + 6% Call Index</p> <p><b>* JPM GBI-EM Broad Diversified Asia Index</b> 는 JP 모간이 발표하는 채권 지수 중 하나로, 이머징 마켓 조건에 부합한 <b>Global Bond Index</b> 유니버스 내 아시아 국가들로만 구성된 <b>Global Bond Index-Emerging Market Broad</b> 의 수정된 버전임.</p>	벤치마크 변경
제 2 부. 9. 가.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지역, 국가, 산업별 투자비중 및 시가총액에 따른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80%를 투자하고, 채권 및 <b>채권관련 증권</b> 에 20~40%를 자산배분할 계획	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지역, 국가, 산업별 투자비중 및 시가총액에 따른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펀드는 일반적으로 주식 및 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80%를 투자하고, 채권 및 <b>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b> 에 20~40%를 자산배분	오타 수정

	이름, 이 자산배분 내역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역의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관점에 따라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 계획이며, 이 자산배분 내역은 시장 상황 및 운용역의 전략적/전술적 자산배분 관점에 따라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제2부. 13.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30%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 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u>연</u> 약 0.30%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효력 발생일

2016년 4월 29일

자세한 내용은 변경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랭클린템플턴 투신운용